

기안자	관리과장	사무처장	이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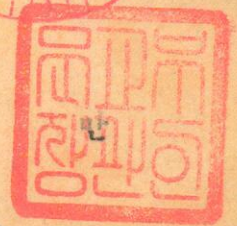
부

문고대 1040.3 37 1964. 4. 14
 수 신 재단법인 연세대학교 이사장
 제 목 국립학교법 부칙 제2조에 의한 학교법인으로의 조직변경 인가

1. 국립학교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으로의 조직을
 변경하기 위하여 1964. 3. 24 자로 귀하가 신청한 본건 별첨 지명장과 같이
 인가하였으니 동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수속의 소정기일을 준수하시기
 바람.

2. 등기후에는 법인의 등기부 등본과 임원의 인명대장을 지체없이
 당부에 제출하시기 바람.

유 침; 조직변경 인가 지명장 1 부.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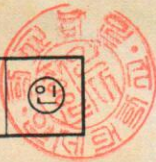
문고부장관

고

광



2167



지 령 서

문고대 1040.3

재단법인 연세대학교

1964 년 3 월 24 일자로 신청한 학교법인에의 조직변경의건 다음
과 같이 인가 한다.

1964 년 4 월 14 일

문교부 장관 고 광



1. 재단법인 연세대학교를 학교법인 연세대학교로 그 조직을 변경한다.
2. 정관 (별첨과 같음) 끝.